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27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 엄태영 · 유용원 · 김상훈

박충권 • 박덕흠 • 조지연

서천호 · 강명구 · 이종배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①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26년 12월 31일</u>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